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관계를 고려한 유연한 조직으로 개편하고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등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북한 정보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세분석국을 정보분석국으로 개편하고, 국내외 통일인식의 확산을 위하여 통일정책실 통일정책협력관을 통일협력국으로 분리·개편하며, 교류협력 관련 기구의 효율화를 위하여 교류협력국·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남북회담본부 및 남북출입사무소를 폐지하면서 남북관계관리단을 신설하는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3. 9.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9월 30까지 존속하는 남북자대책팀을 통일부장관 직속으로 신설하고, 조직의 효율화 및 국정과제·정책현안 이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부의 정원 37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이하 30명, 한시조직에 두는 8급 1명)과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44명(고위공무원단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이하 39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제2조의4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2조의3) 제4항 중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정보화담당관·비상안전담당관 및 통일법제지원팀장”을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을”로, “서기관으로, 통일법제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제2조의4(중전의 제2조의3) 제4항 중 “혁신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혁신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3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통일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개정 및 정비 사항에 대한 총괄·조정

15. 통일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

16. 통일부 소관 법령의 질의에 대한 해석

17. 통일부와 관련된 다른 부처의 법령에 관한 사항 관리
18.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19. 남북합의서 관련 법적 문제의 검토
20. 남북합의서안에 대한 심사
21. 남북합의서 발효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22.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 업무
23.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총괄
24.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처리
25. 법률자문 관리

제2조의4(중전의 제2조의3) 제8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3. 테러 대비 계획 수립, 종합 및 조정
5. 부 내 중대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납북자대책팀장) ① 납북자대책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납북자대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대북정책의 총괄·조정
2.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대북 협상대책 수립 지원
3. 납북자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조

4. 남북자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5. 남북자 관련 국내외 실태조사 및 동향분석
6. 남북자·국군포로 관련 주민의 접촉·왕래 및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
7. 남북자·국군포로 관련 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8. 남북자 관련 국내외 법인·단체 지원
9. 남북자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제정·개정·폐지
10. 남북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
11. 남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제6조 및 제6조의2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제2항 중 “통일정책협력관으로 하며, 통일정책협력관”을 “통일기획관으로 하며, 통일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통일기획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일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제4항 중 “정책총괄과·전략기획과·평화정책과·국제협력과·정책협력과·참여소통과 및 통일기반조성팀”을 “정책총괄과·전략기획과·위기대응과·통일기반조성과·통일미래추진과 및 메시지기획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2항을 삭제한다.

⑥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대북정책의 수립·종합·조정
 2. 통일·대북정책의 분석·평가
 3. 통일·대북정책 관련 대북협상대책 수립 지원
 4. 통일·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관련 입장 수립 및 대응
 5. 통일백서의 발간
 6.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주요 통일·외교·안보정책 관련 관계부처 간
협업체 운영 지원
 7. 통일·대북정책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
 8. 국립통일교육원 업무의 운영 지원
 9. 실 내 예산·국회·홍보·서무·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10.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⑦ 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통일·대북정책 수립
2. 중장기 통일·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관계 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3. 중장기 통일·대북정책과 관련한 연구과제 기획·추진 및 관련 데
이터베이스 구축·운영
4. 중장기 통일·대북정책과 관련한 민간 연구 생태계 기반 구축 및
활성화
5. 통일·통합 및 체제전환 사례의 조사·연구
6. 첨단기술을 활용한 통일·대북정책 및 전략의 수립·추진

7. 새로운 안보문제 관련 통일·대북정책 및 전략의 수립·추진
8.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의 수립·시행
9.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10.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11. 통일·대북정책에 관한 여론조사 및 모니터링

⑧ 위기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사시 대비계획 및 종합훈련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남북관계 관련 위기관리 계획의 수립·종합·통제 및 조정
3.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4.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구축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5.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 전략과 관련된 사항
6. 북한 핵문제 관련 국내 대북정책 수립·추진
7. 핵문제 관련 남북한 간 합의사항의 이행
8.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 등 남북 접경지대(이하 “남북 접경지대”라 한다)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사후관리
10.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11.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12. 남북 접경지대에서의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을 위한 관계부처 및 유
관기관과의 협의

⑨ 통일기반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계획 및 제도의 수립·시행
3.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령의 제정·개정
4. 통일기반 조성 관련 분야별 조사·연구
5. 통일기반 조성 관련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지원
6.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 대비한 법령의 정비 및 제도의 연구·수
립
7. 통일기반 조성 법제도 마련을 위한 자문기구의 운영 및 지원
8. 통일에 대비한 인력 양성

⑩ 통일미래추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미래 청사진 연구·수립
2. 통일방안에 대한 발전방안 연구·수립
3. 통일 이후 분야별 통합과제 연구·수립
4. 통일미래 청사진과 통일방안 및 통일 이후 분야별 통합과제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
5. 통일미래 청사진과 통일방안 및 통일 이후 분야별 통합과제 관련
관계 부처·각급 기관 및 민간 등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6. 통일미래 청사진과 통일방안 등 관련 국내외 공감대 확산 및 홍보

7. 통일 관련 미래예측 조사·연구

⑪ 메시지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대북정책 관련 메시지 기획·총괄·조정
2. 통일·대북정책 관련 메시지 유관부처 및 각급기관 협력
3. 통일·대북정책 관련 메시지의 국내외 확산방안 수립·지원
4. 장관 대외활동 기획·총괄·조정
5. 차관 대외활동 지원
6. 장·차관 대외 메시지 관리 및 홍보 기획

제6조(중전의 제6조의2) 제8항제13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인도적 대북지원(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인도적 대북지원”을 각각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계획”을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 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중 “인도적 대북지원”을 각각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삭제한다.

12.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에 관한 기금 계획 수립 및 지원

13.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에 관한 기금 지원 관련 지침 및 기준 마련

14.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 관련 국제기구 파견관 활동의 지원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지원

제7조의 제목 “(정세분석국)”을 “(정보분석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세분석국장”을 “정보분석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세분석국장”을 “정보분석국장”으로, “북한정보공개센터장으로 하며, 북한정보공개센터장”을 “북한정보협력관으로 하며, 북한정보협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북한정보협력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7조제4항 중 “정세분석국에 정세분석총괄과·정치군사분석과·경제분석과·사회문화분석팀·북한정보서비스과”를 “정보분석국에 정보분석총괄과·정치군사분석과·경제분석과·사회문화분석팀·정보조사협력과·북한정보서비스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세분석총괄과장”을 “정보분석총괄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 제14호 및 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추진

15. 통일플러스센터 통일정보자료실 운영 지원

제7조제11항(중전의 제10항)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북한정보포털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1.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활성화 촉진
12.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지침에 관한 사항
13.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관계기관과의 협력
14.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활용분야 발굴 및 활성화
15. 북한정보 관련 자료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⑨ 정보조사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북한 관련 정보 및 조사 협력
2. 북한 관련 정보 수집, 조사, 관리를 위한 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
3. 북한 관련 공개정보 분석 및 평가
4. 공개정보관리실의 운영 및 관리
5. 부 내 정보상황실 운영
6. 국내외 방송·통신 자료를 통한 북한 동향 파악
7. 북한의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 관련 북한 동향 파악
8. 북한 자료 관련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9. 북한 방송·인터넷·선전매체 자료 보존 및 관리 체계 구축
10. 북한 정세 분석을 위한 자료의 지원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통일협력국) ① 통일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통일협력국에 통일협력기획과·국제협력과·참여소통과·통일인

식확산팀을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통일협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통일협력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국내외 통일협력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수립·시행
3. 국내외 통일협력 관련 현안 대응 및 대책의 수립·시행
4. 통일 관련 기관에 대한 협력 및 지원
5. 민간 통일운동 단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및 지원
6. 통일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7. 통일문화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제도의 수립·정비
8. 통일문화 콘텐츠의 기획·개발 및 보급
9. 통일문화 콘텐츠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10. 통일문화와 관련된 국내외 기관·단체와의 협조
11. 국 내 예산·국회·홍보·서무·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통합 및 체제전환 관련 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업무
2. 통일정책 관련 관계 국가와의 협력
3. 통일정책 관련 국제 홍보콘텐츠의 기획·개발·보급
4. 통일안보관 활동의 지원

5. 국제적 통일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6. 통일정책관련 국제학술행사 개최 및 해외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재외동포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
8. 국제적 통일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9. 그 밖에 통일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⑥ 참여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소통 기반 조성 대책의 수립·시행
2. 통일·대북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3. 통일·대북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의체 운영·관리
4. 통일·대북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관련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5.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및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6.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의체 운영·관리
7.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관련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8. 지역통일플러스센터 운영 관련 총괄·기획

⑦ 통일인식확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 제고를 위한 콘텐츠의 기획·개발·보급
3.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 제고를 위한 자문기구의 운영 및 지원
4.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 제고사업 계획 수립·집행
5.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 제고 관련 활동가 발굴 및 육성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남북회담본부”를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남북관계관리단) ① 남북관계관리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남북관계관리단에 남북대화전략과·당국사업운영과·민간교류관리과·시설관리과 및 상황관리팀을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남북대화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분야별 대북 협상대응 전략의 수립·조정
2. 남북회담 대비 훈련계획 수립
3. 회담 대표단의 임명·관리
4. 남북회담 관련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5. 남북회담의 진행 관리 및 결과의 처리
6. 남북합의서의 점검 및 이행에 관한 사항

7. 남북회담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조
8. 남북회담 관련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9. 남북교류 질서 관리를 위한 법령·제도 기획 및 운영
10. 남북한 간 상사중재 및 투자자산보호,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등
제도 기획·개선
11. 남북교류 관련 법률적 대응사항 지원
12. 남북교류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분석평가
13. 남북교류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시행
14. 남북교류 관련 중장기 계획의 수립·추진
15. 남북관계 관련 통계의 총괄 및 대국민 제공에 관한 사항
16.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17. 남북대화 및 교류 관련 국제협력 업무
18. 남북대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19. 단 내 국회·홍보·사무·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 ④ 당국사업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분야의 남북교류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2. 남북교류 관련 우리 기업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수립 및 현안
대응
 3.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에 관한 교류법상 각종 승인·수
리에 관한 사항
 4.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

독 · 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5. 남북한 간 교역 · 수송 및 경제협력사업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6. 북한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제도 관련 업무
7. 남북교류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 · 감독
8. 경제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법인 · 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9. 남북한 간 교역품목의 공고
10. 남북한 간 교역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 지정
11. 남북한 간 통행·통신·통관 관련 제도 개선
12. 남북출입계획의 총괄 · 기획 및 조정
13.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및 출입심사공무원 지정
14.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련 법 · 제도 운영
15.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련 사전판정 지원 및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의 협조
16. 남북교류 관련 대북제재 동향 파악 및 이행점검
17. 남북한 간 합의에 의해 추진하는 남북협력지구의 조성 · 운영 · 관리 · 지원 정책의 수립 · 시행
18. 개성공업지구 사업 관련 기업 및 재산에 대한 관리 · 지원
19. 개성공업지구의 사업 관련 관리기관의 지도·감독
20. 평화경제특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기획 · 운영
21. 평화경제특구 관련 정책의 수립 · 종합 및 조정

22. 남북협력지구의 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23. 그 밖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4. 남북 공유하천관리 및 재해재난 관련 정책 수립 및 현안 대응

⑤ 민간교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 간 교육, 학술, 언론, 방송, 노동, 출판, 종교, 청소년, 여성, 예술, 체육, 역사, 언어, 저작권 등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이하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이라 한다)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교류법상 각종 승인·수리에 관한 사항

2.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3. 남북한 간 관광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추진 및 북한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현안 대응

4.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을 하는 사람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5.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방문자 사후관리

6.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7.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8.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의 동향 분석·종합 및 통계 유지

9.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에 관한 지원·기획 및 조정

⑥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판문점, 경의선·동해선 등 남북한 간 출입장소 관련 시설·장비, 출입, 보안, 방호 등 통제·관리
 2. 남북통신망 등의 관리·운용,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
 3. 판문점, 경의선·동해선 등 남북한 간 출입장소 관련 각종 행사 등 지원
 4. 판문점, 경의선·동해선 등 남북한 간 출입장소 관련사항의 전산화 및 통계 관리
 5. 기타 청사 시설 및 장비의 관리,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관리
 6. 경의선·동해선 등 철도·도로 출입시설에 대한 체험·견학 등 지원
 7. 단 내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총괄
- ⑦ 상황관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 간 연락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2. 연락관의 파견 및 남북연락업무의 수행
 3. 남북직통전화의 운용 및 판문점지역 동향의 수집, 군사정전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조
 4.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남북한 간 합의에 따른 연락사무소의 운영
 5. 판문점지역 내 행사를 포함한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에 관한 행사운영계획의 기획·운영
 6.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회담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7. 판문점, 경의선·동해선 등 남북한 간 출입장소 관련 긴급상황의 처리 및 관계기관 협조

8. 남북회담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 수집·발간 및 자료실의 운영

9. 그 밖에 남북한 간 연락·출입에 관한 사항

제19조 앞에 “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를 삭제하고, 제 19조 및 제19조의2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며, 제10조 앞에 장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제10조(종전의 제19조) 제1항 중 “가등급”을 “나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11조(종전의 제19조의2)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6장의2(제19조의3)를 삭제한다.

제20조의3 앞에 “제7장의3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삭제한다.

제7장의3제20조의3을 제12조로 한다.

제12조 앞에 장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북한인권기록센터”

제12조(종전의 제20조의3) 제3항제7호 중 “실태조사 연례보고서 발간 및 인권침해”를 “침해”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9호의2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제20조의4 앞에 “제7장의4 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삭제한다.

제20조의4를 제13조로 하고, 제1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제13조(중전의 제20조의4)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운영과장”을 “센터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편성”을 “편성·집행·회계 및 결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14. 센터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15. 센터 내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1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조달·관리
17. 센터 시설·장비의 유지 및 관리
18. 식당·숙박시설 및 보건실 등 센터 후생시설의 운영
19. 센터 내 자연재해, 화재 및 그 밖의 재난에 대한 안전 대책의 수립·시행

제20조의5 앞에 “제7장의5 국립통일교육원”을 삭제한다.

제20조의5 및 제20조의6을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 제1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국립통일교육원

제21조 앞에 “제8장 공무원의 정원”을 삭제하고, 제21조, 제22조 및 제22조의2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제1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16조(종전의 제21조) 제2항 중 “담당하는”을 “담당하는 1명(4·5급 1명), 통일인식확산 업무를 담당하는”으로, “12명(5급)”을 “20명(4급 7명, 5급)”으로 하고, 제4항을 삭제한다.

제17조(종전의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종전의 제22조) 제2항 전단 중 “남북회담본부”를 각각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전단 중 “있으며,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4명 및”을 “3명 및”으로, “4명은”을 “3명은”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하고, 제23조의2를 제19조로 하며, 제19조 (종전의 제23조의2) 중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정치군사회담과, 경제인도회담과, 회담지원과, 회담운영과 및 남북연락과”를 “정보분석국에 두는 정보분석총괄과, 정치군사분석과, 경제분석과, 사회문화분석팀으”로 한다.

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제20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

3조로 한다.

제21조(중전의 제25조)의 제목 “(통일전략기획관)”을 “(통일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통일전략기획관”을 각각 “통일기획관”으로 한다.

제22조(중전의 제26조)의 제목 “(통일미래추진단)”을 “(통일미래추진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일미래추진단장”을 “통일미래추진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통일미래추진단”을 “통일미래추진과”로 한다.

별표 1 중 “(제21조제1항 본문 관련)”을 “(제16조제1항 본문 관련)”으로 하고, 총계 “309”를 “273”으로 하며, 일반직 계 “305”를 “269”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12”를 “10”으로 하며,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9”를 “8”로 하고, 서기관 “15”를 “13”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을 “5”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 다음에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을 신설하며, 임기제 서기관(비상안전계획담당관) 1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7”를 신설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0”를 삭제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80”을 “65”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65 다음에 “행정사무관 4”를 신설한다.

별표 1 중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0”을 “4”로 하고, 행정주사 “33”을 “29”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

사 “4”를 “2”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7”를 삭제하며, 전산주사 “6”을 “5”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4 다음에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주사 16”를 신설하며, 행정주사보 “13”을 “11”로 한다.

별표 1 중 행정서기 “10”을 “9”로 하고, 행정서기 9 다음에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방송통신서기 또는 운전서기 8”를 신설하며,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방송통신서기 또는 운전서기 8”를 삭제하고, 전산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1”를 신설하며, “행정서기보 4”를 삭제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속기 담당) 1 다음에 “행정전문관 2”를 신설한다.

별표 1의2 중 “(제21조제1항 단서 관련)”을 “(제16조제1항 단서 관련)”으로 하고, 총계 “309”를 “273”으로 하며, 일반직 계 “305”를 “269”로 하고, 일반직 계 269 다음에 “고위공무원단 10”를 신설하며, “고위공무원단 12”를 삭제하고,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9”를 “8”로 하며, 서기관 “15”를 “13”으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을 “5”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 다음에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를 신설하고, 임기제 서기관(비상안전계획담당관) 1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7”를 신설한다.

별표 1의2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0”을 삭제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기

기록연구관 “83”을 “68”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68 다음에 “행정사무관 4”를 신설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0”을 “4”로 하며, 행정주사 “30”을 “26”으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4”를 “2”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7”를 삭제하고, 전산주사 “6”을 “5”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4 다음에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주사 16”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13”을 “11”로 한다.

별표 1의2 중 행정서기 “10”을 “9”로 하고, 행정서기 9 다음에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방송통신서기 또는 운전서기 8”를 신설하며,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방송통신서기 또는 운전서기 8”를 삭제하고, 전산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1”를 신설하며, “행정서기보 4”를 삭제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속기 담당) 1 다음에 “행정전문관 2”를 신설한다.

별표 2의 제목 “남북회담본부 공무원정원표 (제22조제1항 관련)”을 “남북관계관리단 공무원정원표 (제17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총계 및 일반직 계 “72”를 각각 “64”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3”을 “1”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1 다음에 “서기관 2”를 신설하며, 서기관 2 다음에 “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를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 다음에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를 신설하며,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를 삭제하고, “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4”를 삭제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4”를 신설하고, 행정

사무관 “9”를 “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3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를 신설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를 신설한다.

별표 2 중 행정주사 “7”을 “4”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를 삭제하며,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를 “4”로 하고,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4 다음에 “행정 · 공업 · 시설 또는 방송통신주사 1”를 신설하며, “행정주사보 1”를 삭제하고,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을 “2”로 하며, “행정서기 3”를 삭제하고, 공업서기 · 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4”를 “5”로 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3”를 삭제하고, 방호서기보 “6”을 “5”로 하며, 방호서기보 5 다음에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위생서기보 3”를 신설한다.

별표 2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위생서기보 5”를 삭제하고, 운전서기보 “3”을 “4”로 하며, 건축운영서기보 1 다음에 “기계운영서기보 1”를 신설하고, “기계운영서기보 1”를 삭제하며, “수석전문관 또는 행정전문관 7”를 삭제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속기 담당) 1”를 삭제한다.

별표 4 중 “(제22조제3항 본문 관련)”을 “(제17조제3항 본문 관련)”으로 하고, 총계 및 일반직 계 “95”를 각각 “91”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 다음에 “서기관 2”를 신설하고, 서기관 2 다음에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를 신설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 다음에 “행정사무관 8”를 신설

하고, 행정사무관 8 다음에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를 신설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다음에 “의무사무관 8”를 신설하고, 의무사무관 8 다음에 “간호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2”를 신설하며, 간호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2 다음에 “행정주사 20”를 신설하고, 행정주사 20 다음에 “전산주사 2”를 신설하며, 전산주사 2 다음에 “간호주사 또는 약무주사 2”를 신설하고, 간호주사 또는 약무주사 2 다음에 “행정주사보 14”를 신설한다.

별표 4 행정주사보 14 다음에 “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을 신설하고, 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다음에 “농업주사보 1”를 신설하며, 농업주사보 1 다음에 “간호주사보 3”를 신설하고, 간호주사보 3 다음에 “약무주사보 1”를 신설하며, 약무주사보 1 다음에 “행정서기 1”를 신설하고, 행정서기 1 다음에 “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를 신설하며, 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 다음에 “간호서기 2”를 신설하고, 간호서기 2 다음에 “의료기술서기 3”를 신설하며, 의료기술서기 3 다음에 “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3”를 신설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3 다음에 “방호서기보 6”를 신설하며, 방호서기보 6 다음에 “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를 신설하고, “서기관 2”를 삭제한다.

별표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을 삭제하고, “행정사무관 8”를 삭제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를

삭제하고, “의무사무관 8”를 삭제하며, “간호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2”를 삭제하고, “행정주사 21”를 삭제하며, “전산주사 2”를 삭제하고, “간호주사 또는 약무주사 2”를 삭제하며, “행정주사보 13”를 삭제하고, “농업주사보 1”를 삭제하며,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를 삭제하고, “간호주사보 또는 약무주사보 5”를 삭제한다.

별표 4 “행정서기 1”을 삭제하고, “공업서기 · 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4”를 삭제하며, “간호서기 2”를 삭제하고, “의료기술서기 3”를 삭제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4”를 삭제하고, “방호서기보 6”를 삭제하며,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3”를 삭제하고, “운전서기보 2”를 삭제하며,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 다음에 “운전서기보 2”를 신설한다.

별표 4의2 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공무원 정원표 “제22조제3항”을 “제17조제3항”으로 하고, 총계 및 일반직 계 “95”를 각각 “91”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 다음에 “서기관 2”를 신설하고, 서기관 2 다음에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를 신설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 다음에 “행정사무관 9”를 신설하고, 행정사무관 9 다음에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를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다음에 “의무사무관 8”를 신설하고, 의무사무관 8 다음에 “간호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2”를 신설하며, 간호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2 다음에 “행정주사 19”를 신설하고, 행정주사 19 다음에 “전산주사 2”를 신설하며, 전산주사 2 다음에

“간호주사 또는 약무주사 2”를 신설하고, 간호주사 또는 약무주사 2 다음에 “행정주사보 14”를 신설한다.

별표 4의2 행정주사보 14 다음에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을 신설하고,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다음에 “농업주사보 1”를 신설하며, 농업주사보 1 다음에 “간호주사보 3”를 신설하고, 간호주사보 3 다음에 “약무주사보 1”를 신설하며, 약무주사보 1 다음에 “행정서기 1”를 신설하고, 행정서기 1 다음에 “공업서기 · 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를 신설하며, 공업서기 · 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 다음에 “간호서기 2”를 신설하고, 간호서기 2 다음에 “의료기술서기 3”를 신설하며, 의료기술서기 3 다음에 “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3”를 신설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3 다음에 “방호서기보 6”를 신설하며, 방호서기보 6 다음에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를 신설하고, “서기관 2”를 삭제한다.

별표 4의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을 삭제하고, “행정사무관 9”를 삭제하며,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를 삭제하고, “의무사무관 8”를 삭제하며, “간호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2”를 삭제하고, “행정주사 20”를 삭제하며, “전산주사 2”를 삭제하고, “간호주사 또는 약무주사 2”를 삭제하며, “행정주사보 13”를 삭제하고, “농업주사보 1”를 삭제하며,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를 삭제하고, “간호주사보 또는 약무주사보 5”를 삭제한다.

별표 4의2 “행정서기 1”을 삭제하고, “공업서기 · 시설서기 또는 방송통

신서기 4”를 삭제하며, “간호서기 2”를 삭제하고, “의료기술서기 3”를 삭제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4”를 삭제하고, “방호서기보 6”를 삭제하며,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3”를 삭제하고, “운전서기보 2”를 삭제하며,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 다음에 “운전서기보 2”를 신설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표 7의2 중 “(제22조제8항 본문 관련)”을 “(제17조제8항 본문 관련)”으로 한다.

별표 7의3 중 “(제22조제8항 단서 관련)”을 “(제17조제8항 단서 관련)”으로 한다.

별표 7의4 중 “(제22조제9항 본문 관련)”을 “(제17조제9항 본문 관련)”으로 하고, 총계 및 일반직 계 “22”를 각각 “15”로 하며,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를 삭제하고, 행정주사 “6”을 “4”로 하며, 행정주사 4 다음에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를 신설하고, “전산주사 1”를 삭제하며,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를 삭제하고, 행정주사보 “6”을 “4”로 하며, 행정주사보 4 다음에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를 신설하고,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다음에 “간호주사보 1”를 신설한다.

별표 7의6 중 “(제22조제10항 관련)”을 “(제17조제10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9 중 “(제24조 관련)”을 “(제20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 중 “(제27조 관련)”을 “(제23조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2023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기로 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은 2025년 9월 30일까지 존속을 연장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납북자대책팀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 및 납북자대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 및 납북자대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이산가족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0000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라 감축되는 통일부의 정원 37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이하 31명)과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44명(고위공무원단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

명, 4급 또는 5급 이하 3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통일부 소
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1]

통일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관련)

1. 통일기획관(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	1

2. 통일미래추진과(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일반직 계	7
서기관	1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3
행정주사	2
행정주사보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3(기획조정실장) ① ~ ③ (생 략)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 담당관 · <u>혁신행정담당관</u> · 정보 화담당관 · 비상안전담당관 및 통일법제지원팀장 각 1명을 두 되, 기획재정담당관 · <u>혁신행정</u> <u>담당관</u> 및 정보화담당관은 부이 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u>통일법제지원팀장</u> 은 서기관 또는 <u>행정사무관</u> 으로 보한다.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 한다. 1. ~ 14. (생 략) <u><신 설></u> 15. ~ 18. (생 략) ⑥ <u>혁신행정담당관</u> 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 한다. 1. ~ 9. (생 략)	제2조의4(기획조정실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혁신행정법무담당관</u> ----- ----- ----- ----- <u>혁신행정법무담</u> <u>당관</u> ----- ----- ----- <u>서기관</u> ----- ----- -----. ⑤ ----- ----- -----. 1. ~ 14. (현행과 같음) <u>14의2.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u> <u>및 실무위원회 운영</u> 15. ~ 18. (현행과 같음) ⑥ <u>혁신행정법무담당관</u> ----- ----- -----. 1. ~ 9. (현행과 같음)

23. ~ 27.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⑦ (생략)

⑧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

10. ~ 13. (현행 제23호부터 제27호까지와 같음)

14. 통일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개정 및 정비 사항에 대한 총괄·조정

15. 통일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

16. 통일부 소관 법령의 질의에 대한 해석

17. 통일부와 관련된 다른 부처의 법령에 관한 사항 관리

18.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19. 남북합의서 관련 법적 문제의 검토

20. 남북합의서안에 대한 심사

21. 남북합의서 발효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22.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 업무

23.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총괄

24.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처리

25. 법률자문 관리

⑦ (현행과 같음)

⑧ -----

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 2. (생략)

3. 남북관계 관련 위기관리 계획의 수립·종합·통제 및 조정

4. (생략)

<신설>

5. · 6. (생략)

⑨ 통일법제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통일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개정 및 정비 사항에 대한 총괄·조정

1의2. 통일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

2. 통일부 소관 법령의 질의에 대한 해석

3.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4. 남북합의서 관련 법적 문제의 검토

----.

1. ~ 2. (현행과 같음)

3. 테러 대비 계획 수립, 종합 및 조정

4. (현행과 같음)

5. 부 내 중대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

6. · 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삭제>

5. 남북합의서안에 대한 심사
 6. 남북합의서 발효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7.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 업무
 8.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총괄
 9.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 처리
 10. 법률자문 관리
- <신 설>

- 제2조의3(납북자대책팀장) ① 납북자대책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납북자대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대북정책의 총괄·조정
 2.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대북협상대책 수립 지원
 3. 납북자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조
 4. 납북자 관련 국내외 관계기관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5. 납북자 관련 국내외 실태조사 및 동향분석
 6.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주민의 접촉·왕래 및 물자의 반

제6조(통일정책실) ① (생략)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일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통일정책협력관으로 하며, 통일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통일정책협력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9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4

출·반입 승인

7.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8. 납북자 관련 국내외 법인·단체 지원

9. 납북자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제정·개정·폐지

10. 납북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

11.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제5조(통일정책실) ① (현행과 같음)

② -----

통일기획관으로 하며, 통일기획관-----

-----.

③ 통일기획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일정책실장을 보좌한다.

호, 제18호 및 제19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통일정책실에 정책총괄과 ·
전략기획과 · 평화정책과 · 국제
협력과 · 정책협력과 · 참여소통
과 및 통일기반조성팀을 둔다.

⑤ (생략)

⑥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정책의 종합 · 조정
2. 연간 통일정책의 수립
3. 당면한 대북정책의 수립 · 추
진
4. 통일정책 관련 대북협상대책
수립 지원
5. 통일정책 및 남북관계 관련
입장 수립 및 대응
6. 통일정책의 분석 및 평가
7.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주요
안보정책 관련 관계부처 간
협의체 운영 지원
8. 통일정책에 대한 연설문 및
강연자료의 작성
9. 통일정책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

④ ----- 정책총괄과 ·
전략기획과 · 위기대응과 · 통일
기반조성과 · 통일미래추진과
및 메시지기획팀-----

·

⑤ (현행과 같음)

⑥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 · 대북정책의 수립 · 종
합 · 조정
2. 통일 · 대북정책의 분석 · 평
가
3. 통일 · 대북정책 관련 대북협
상대책 수립 지원
4. 통일 ·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관련 입장 수립 및 대응
5. 통일백서의 발간
6.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주요
통일 · 외교 · 안보정책 관련
관계부처 간 협의체 운영 지
원
7. 통일 · 대북정책 관련 자문기
구의 운영
8. 국립통일교육원 업무의 운영

10. 실내 예산 · 국회 · 홍보 · 서
무 · 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11.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
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방안 등 통일과정 및 통
일 후에 대비한 중장기 통일
정책 및 전략의 수립

2. 삭제

3. 중장기 통일정책과 관련한
민간 연구개발 지원

4. 중장기 통일정책 수립을 위
한 관계 부처 및 각급 기관과
의 협조

5.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
한 법령의 정비 및 제도의 연
구 · 수립

6. 통일에 대비한 인력 양성

7.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

8.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
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

9. 실 내 예산 · 국회 · 홍보 · 서
무 · 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10.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통일 · 대북정책 수립

2. 중장기 통일 · 대북정책 수립
을 위한 관계 부처 및 각급 기
관과의 협조

3. 중장기 통일 · 대북정책과 관
련한 연구과제 기획 · 추진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 운
영

4. 중장기 통일 · 대북정책과 관
련한 민간 연구 생태계 기반
구축 및 활성화

5. 통일 · 통합 및 체제전환 사
례의 조사 · 연구

6. 첨단기술을 활용한 통일 · 대
북정책 및 전략의 수립 · 추진

7. 새로운 안보문제 관련 통일
· 대북정책 및 전략의 수립 ·

9.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의 구성·운영

10. 통일·통합 및 체제전환 사

례의 조사·연구

11. 통일정책에 관한 여론조사

및 모니터링

⑧ 평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과정 대비계획의 수립·

운영

2. 유사시 대비계획 및 종합훈

련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3.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

정

3의2. 평화 공감대 확산 관련 정

책의 수립·시행

4.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구축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

종합 및 조정

5.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 전

략과 관련된 사항

추진

8.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의 수립·

시행

9.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

도별 시행계획 수립

10.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및 실

무위원회의 구성·운영

11. 통일·대북정책에 관한 여

론조사 및 모니터링

⑧ 위기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사시 대비계획 및 종합훈

련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남북관계 관련 위기관리 계

획의 수립·종합·통제 및 조

정

3.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

정

4.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구축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

종합 및 조정

5.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 전

략과 관련된 사항

6. 북한 핵문제 관련 국내 대북

6. 북한 핵문제 관련 국내 대북 정책 수립·추진

7. 핵문제 관련 남북한 간 합의 사항의 이행

8.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 등 남북 접경지대(이하 “남북 접경지대”라 한다)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사후관리

10.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11.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12. 남북 접경지대에서의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을 위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⑨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통합 및 체제전환 관련 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업무

2. 통일정책 관련 관계 국가와

정책 수립·추진

7. 핵문제 관련 남북한 간 합의 사항의 이행

8.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 등 남북 접경지대(이하 “남북 접경지대”라 한다)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사후관리

10.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11.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12. 남북 접경지대에서의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을 위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⑨ 통일기반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계획 및 제도의 수립·시행

의 협력

3. 통일정책 관련 국제 홍보콘
테츠의 기획·개발·보급
4. 통일안보관 활동의 지원
5. 국제적 통일환경의 조성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6. 통일정책관련 국제학술행사
개최 및 해외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재외동포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
8. 그 밖에 통일부 내 다른 부서
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 ⑩ 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정책 국내 협력 강화 대
책의 수립·시행
 2. 통일 관련 기관에 대한 협력
및 지원
 3. 민간 통일운동 단체와의 협
업체계 구축 및 지원
 4. 통일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5. 통일문화 관련 법령의 제·
개정과 제도의 수립·정비

3.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령
의 제정·개정

4. 통일기반 조성 관련 분야별
조사·연구
5. 통일기반 조성 관련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지원
6.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 대
비한 법령의 정비 및 제도의
연구·수립
7. 통일기반 조성 법제도 마련
을 위한 자문기구의 운영 및
지원
8. 통일에 대비한 인력 양성

⑩ 통일미래추진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통일미래 청사진 연구·수립
2. 통일방안에 대한 발전방안
연구·수립
3. 통일 이후 분야별 통합과제
연구·수립
4. 통일미래 청사진과 통일방안
및 통일 이후 분야별 통합과
제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
5. 통일미래 청사진과 통일방안
및 통일 이후 분야별 통합과

6. 통일문화 콘텐츠의 기획·개발 및 보급

7. 통일문화 콘텐츠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8. 통일문화와 관련된 국내외 기관·단체와의 협조

9. 국립통일교육원 업무의 운영 지원

10. 통일백서의 발간

⑪ 참여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소통 기반 조성 대책의 수립·시행

2. 통일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3. 통일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의체 운영·관리

4. 통일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관련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5. 지역별 통일 기반 조성 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6. 지역별 통일 기반 조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의체 운영

제 관련 관계 부처·각급 기관 및 민간 등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6. 통일미래 청사진과 통일방안 등 관련 국내외 공감대 확산 및 홍보

7. 통일 관련 미래예측 조사·연구

⑪ 메시지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대북정책 관련 메시지 기획·총괄·조정

2. 통일·대북정책 관련 메시지 유관부처 및 각급기관 협력

3. 통일·대북정책 관련 메시지의 국내외 확산방안 수립·지원

4. 장관 대외활동 기획·총괄·조정

5. 차관 대외활동 지원

6. 장·차관 대외 메시지 관리 및 홍보 기획

<u>· 관리</u> <u>7. 지역별 통일 기반 조성 관련</u> <u>공공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u> <u>8. 인천통일플러스센터의 운영</u> <u>⑫ 통일기반조성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u> <u>2.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법령의 제정·개정</u> <u>3. 통일기반조성 관련 분야별 연구 및 조사</u> <u>4. 통일기반조성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지원</u> <u>5.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u> <u>6.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 제고를 위한 콘텐츠의 기획·개발·보급</u> <u>7.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 제고를 위한 자문기구의 운영 및 지원</u>	<u><삭 제></u> <u>제6조의2(인권인도실) ① ~ ⑦</u> <u>제6조(인권인도실) ① ~ ⑦ (현행</u>
--	--

(생략)	과 같음)
⑧ 이산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u>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대북정책의 총괄·조정</u>	<u><삭 제></u>
14. <u>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대북협상대책 수립 지원</u>	<u><삭 제></u>
15. <u>납북자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조</u>	<u><삭 제></u>
16. <u>납북자 관련 국내외 관계기관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u>	<u><삭 제></u>
17. <u>납북자 관련 국내외 실태조사 및 동향분석</u>	<u><삭 제></u>
18. <u>납북자·국군포로 관련 주민의 접촉·왕래 및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u>	<u><삭 제></u>
19. <u>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u>	<u><삭 제></u>
20. <u>납북자 관련 국내외 법인·단체 지원</u>	<u><삭 제></u>
21. <u>납북자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제정·개정·폐지</u>	<u><삭 제></u>
22. <u>납북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u>	<u><삭 제></u>
23. <u>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u>	<u><삭 제></u>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⑨ 인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도적 대북지원(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관련된 통합적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업무의 조정 및 사업 승인 시 협조
2.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통계 업무의 종합·조정
3.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5.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6. 정부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후 관리
7.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의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8.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⑨ -----
-----.

1.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

2.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

3.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

4.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

5.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

6. -----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 계획-----

7. -----
-----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

8.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 ----- --
9. <u>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반입 승인</u>	9. <u>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u> -----
10. <u>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남 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u>	10. <u>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u> ----- --
11. <u>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에 대 한 지도·감독·행정조사 및 조정명령</u>	11. <u>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u> ----- -----
12. <u>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u>	12. <u>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 에 관한 기금 계획 수립 및 지원</u>
13. <u>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민간단체에 대한 협력·지원 및 관리</u>	13. <u>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 에 관한 기금 지원 관련 지침 및 기준 마련</u>
14. <u>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기 금 계획 수립 및 지원</u>	14. <u>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 관련 국제기구 파견관 활동의 지원</u>
15. <u>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기 금 지원 관련 지침 및 기준 마 련</u>	15. <u>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 정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 관과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 력·지원</u>
16. <u>인도적 대북지원 관련 국제 기구 파견관 활동의 지원</u>	<삭 제>

⑩ ~ ⑫ (생략)

제7조(정세분석국) ① 정세분석국장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
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
다.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세
분석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북한정보공개센터장으로 하며,
북한정보공개센터장은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
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북한정보공개센터장은 「통
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
1조제3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
다.

④ 정세분석국에 정세분석총괄
과·정치군사분석과·경제분석
과·사회문화분석팀·북한정보
서비스과 및 자료관리팀을 두
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
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⑩ ~ ⑫ (현행과 같음)

제7조(정보분석국) ① 정보분석국
장-----

--.

② -----
-----정보
분석국장-----
북한정보협력관으로 하며, 북한
정보협력관-----

-----.

③ 북한정보협력관은 「통일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3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
다.

④ 정보분석국에 정보분석총괄
과·정치군사분석과·경제분석
과·사회문화분석팀·정보조사
협력과·북한정보서비스과---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정세분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⑥ ~ ⑧ (생략)

⑨ 북한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14. 공개정보관리실의 운영 및 관리

15. 북한 관련 공개정보 활용 분석 및 평가

⑩ 자료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10. 부 내 정보상황실 운영

11. 국내외 방송·통신 자료를 통한 북한 동향 파악

12. 북한의 인터넷 선전매체를 통한 북한 동향 파악

13. 북한 자료 관련 대내외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14. 북한 방송·인터넷·선전매체 자료 보존 및 관리 체계 구축

-----.

⑤ 정보분석총괄과장-----
-----.

1. ~ 10.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⑩ -----
-----.

1. ~ 13. (현행과 같음)

14.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추진

15. 통일플러스센터 통일정보자료실 운영 지원

⑪ -----
-----.

1. ~ 9. (현행과 같음)

10. 북한정보포털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1.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활성화 촉진

12.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지침에 관한 사항

13.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관계기관과의 협력

14.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활용분야 발굴 및 활성화

15. 북한 정세 분석을 위한 자료
의 지원

<신 설>

제8조(교류협력국) ① 교류협력국

15. 북한정보 관련 자료의 보안
대책 수립·시행

⑨ 정보조사협력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북한
관련 정보 및 조사 협력

2. 북한 관련 정보 수집, 조사,
관리를 위한 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

3. 북한 관련 공개정보 분석 및
평가

4. 공개정보관리실의 운영 및
관리

5. 부 내 정보상황실 운영

6. 국내외 방송·통신 자료를
통한 북한 동향 파악

7. 북한의 인터넷 및 소셜 미디
어 활동 관련 북한 동향 파악

8. 북한 자료 관련 대내외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9. 북한 방송·인터넷·선전매
체 자료 보존 및 관리 체계 구
축

10. 북한 정세 분석을 위한 자료
의 지원

제8조(통일협력국) ① 통일협력국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류협력국에 교류총괄과 · 남북경협과 · 사회문화교류과 및 개발지원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류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추진
2.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 남북교류협력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 · 시행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 · 추진
5.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 종합 및 지원
6.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의 운용
7.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8. 남북교류협력 관련 합의서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통일협력국에 통일협력기획과 · 국제협력과 · 참여소통과 · 통일인식확산팀을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통일협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통일협력 정책의 수립 · 종합 및 조정
2. 국내외 통일협력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수립 · 시행
3. 국내외 통일협력 관련 현안 대응 및 대책의 수립 · 시행
4. 통일 관련 기관에 대한 협력 및 지원
5. 민간 통일운동 단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및 지원
6. 통일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수립 · 시행
7. 통일문화 관련 법령의 제 · 개정과 제도의 수립 · 정비

이행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원·기획 및 조정

10.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등에 관한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11. 남북교류협력 동향의 종합 및 분석

12. 남북관계 관련 통계의 총괄 및 대국민 제공에 관한 사항

13.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14.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

15.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관·단체의 지도·육성 및 관리

16.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1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남북경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2.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

8. 통일문화 콘텐츠의 기획·개발 및 보급

9. 통일문화 콘텐츠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10. 통일문화와 관련된 국내외 기관·단체와의 협조

11. 국내 예산·국회·홍보·사무·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1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통합 및 체제전환 관련 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업무

2. 통일정책 관련 관계 국가와의 협력

3. 통일정책 관련 국제 홍보콘텐츠의 기획·개발·보급

4. 통일안보관 활동의 지원

5. 국제적 통일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6. 통일정책관련 국제학술행사 개최 및 해외전문가 네트워크

<u>제협력사업의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개성공업지구 등 남북한이 합의한 지구(이하 “남북협력지구”라 한다)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u> 3. <u>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u> 4. <u>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u> 5. <u>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반입 승인(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u> 6. <u>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조사 및 조정명령</u> 7. <u>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u>	<u>구축에 관한 사항</u> 7. <u>재외동포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u> 8. <u>국제적 통일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u> 9. <u>그 밖에 통일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u> ⑥ <u>참여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소통 기반 조성 대책의 수립·시행</u> 2. <u>통일·대북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사업 계획의 수립·시행</u> 3. <u>통일·대북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의체 운영·관리</u> 4. <u>통일·대북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관련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u> 5. <u>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및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u> 6. <u>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의체 운영</u>
---	---

8.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을 하는 자의 대북협업의 지원(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9.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동향의 분석 및 통계 유지
10.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1.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민관협력체계 구축
12. 남북한이 합의한 경제협력사업의 추진·종합 및 지원
13. 남북한 간 교역품목의 공고
14. 남북한 간 교역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 지정
15. 남북한 간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및 수송업자 지원
16.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및 출입심사공무원 지정
17. 남북출입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18. 북한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 관리
7.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관련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8. 지역통일플러스센터 운영 관련 총괄·기획
- ⑦ 통일인식확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 제고를 위한 콘텐츠의 기획·개발·보급
 3.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 제고를 위한 자문기구의 운영 및 지원
 4.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 제고사업 계획 수립·집행
 5.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 제고 관련 활동가 발굴 및 육성

제도 관련 업무

19. 남북한 간 관광과 관련된 정

책의 수립·추진

20.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

북지원과 관련된 물자 반입·

출입 관리의 지원 총괄

21.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

22.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과 관

련된 법령 및 고시의 운용

23. 전략물자의 대북반출과 관

련된 사전판정 지원 및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의 협

조

24.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과 관

련된 제도의 홍보 및 교육

⑤ 사회문화교류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 간 교육, 학술, 언론,

방송, 노동, 출판, 종교, 청소

년, 여성, 예술, 체육, 역사, 언

어, 저작권 분야 등 사회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이하 “사

회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

이라 한다)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추진

2. 사회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
 - 시행
3. 사회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4. 사회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의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5. 사회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6. 사회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 물자의 대북 반출·반입 승인
7. 사회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8. 사회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9. 사회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한 간 실무회

답 대책의 수립

10. 사회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
력을 위한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11. 사회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
력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12. 사회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
력으로 인한 북한방문자 사후
관리

13. 사회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
력의 동향 분석·종합 및 통
계 유지

⑥ 개발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3.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4. 개발지원협력 사업계획의 수
립·시행 및 사후 관리

5.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의 개
발지원협력사업에 대한 기획
·조정·승인 및 지원

6.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남북

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7.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물자
의 대북 반출·반입 승인

8.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남북
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9. 개발지원협력 분야 협력사업
승인 및 협력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조사 및 조
정명령

10.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국
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11.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동향
의 분석 및 통계 유지

12.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남
북협력기금 지원 지침 및 기
준 마련에 관한 사항

제8조의2(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
단) ①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
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
다.

②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에
남북협력지구기획과 및 남북협
력지구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

<삭 제>

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남북협력지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련된 지원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남북협력지구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계획의 수립과 중장기 발전방안의 종합·조정

3.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과 관련된 당국 간 협의·연락 및 합의서 체결·이행·점검에 관한 사항의 지원

4. 남북협력지구 안의 긴급 상황에 관한 처리 및 안전·보안대책의 수립·시행

5. 원산지 문제 등 남북협력지구 안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관세 인정 관련 협상 지원

6. 남북협력지구 안 생산품의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에 대한 대책의 수립·시행

7. 외자유치 등 남북협력지구

대한 투자활성화 방안의 수립

· 시행

8. 남북협력지구 안의 외환관리

대책의 수립·시행

9. 남북협력지구 입주기업에 대

한 세제·금융지원 대책의 수

립·시행

10. 남북협력지구 건설공사와

관련된 지원대책의 수립·시

행 및 남북협력지구 안의 시

설물에 대한 유지 및 관리 지

원

11. 남북협력지구 분양 관련 사

항의 지원

12. 남북협력지구 안의 기반시

설, 물류시설 등에 대한 건설

지원 및 이용·관리기준의 마

련

13.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건

설·전력·통신 및 환경·도

로·교통체계 등의 개발기획

및 관리대책의 수립 지원

14.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

련된 재원 지원대책의 수립

및 집행의 감독

15.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

- 련된 통계자료의 작성·관리
16.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17. 남북협력지구 관련 국내외 경제·산업 동향 분석·평가
18. 남북협력지구 관련 국내외 협력
19. 남북협력지구의 개발기획·관리와 관련된 국내법·제도 정비 및 정비 계획의 수립·지원
20. 해외공단 운영 사례 조사 및 연구용역의 관리
21. 서무·예산집행 및 물품관리 등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운영지원
22. 그 밖에 단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④ 남북협력지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협력지구의 전력 등 기반시설 건설, 투자기업 등에 대한 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2. 남북협력지구의 편의·지원 시설 및 법률·회계·세무와

관련된 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3.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주민

접촉·왕래에 대한 승인

4.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물자

의 반출·반입승인, 전략물자

반출에 대한 심사체계의 관리

와 전략물자 반출 관련 제도

의 운영·개선

5. 남북협력지구 입주기업에 대

한 생산 활동의 지원

6. 남북협력지구의 종합지원센

터 운영 지원

7. 남북협력지구 안의 기업의

창설에 대한 등록·운영 등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의 발전

적 운영 및 제도개선

8. 남북협력지구 입주기업에 대

한 노무관리·산업안전·기술

교육 제도, 보건위생·근로조

건 및 탁아소 건설·운영, 소

방안전, 환경, 광고물관리 등

에 관한 제도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9. 남북협력지구 입주기업의 회

계검사 제도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10. 남북협력지구 사업 관련 업
체 간의 분쟁조정 제도의 발
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11. 남북협력지구 안의 사건 ·
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관리

12.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
련된 정보화 추진계획의 수립
· 시행

13.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기
관 · 단체와의 협조 및 기관 ·
단체 등 사이의 갈등에 대한
관리 · 조정

14. 남북협력지구 입주기업 간
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지원

15.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
련된 남북 사업자 간 협상의
지원

16.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
련된 관리기관의 지도 · 감독

17. 남북협력지구의 통행 · 통관
· 통신 제도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18. 남북협력지구 아카이브 구
축 및 관리

19. 남북협력지구 관련 남북공

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20. 남북협력지구 관련 남북상
사중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연락 및 지원

21. 남북협력지구 운영 관련 남
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에서 위임한 업무

22.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남·북측 사무처장 간 회의진
행 및 기록관리

23. 그 밖에 개성공단 남북공동
위원회 사무처 운영 및 지원
에 관한 사항

제3장 남북회담본부

제9조(본부장) 남북회담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장 남북관계관리단

제9조(남북관계관리단) ① 남북관
계관리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
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
급으로 한다.

② 남북관계관리단에 남북대화
전략과·당국사업운영과·민간
교류관리과·시설관리과 및 상
황관리팀을 두되, 각 과장은 서
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팀
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

로 보한다.

③ 남북대화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분야별 대북 협상대응 전략의 수립·조정

2. 남북회담 대비 훈련계획 수립

3. 회담 대표단의 임명·관리

4. 남북회담 관련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5. 남북회담의 진행 관리 및 결과의 처리

6. 남북합의서의 점검 및 이행에 관한 사항

7. 남북회담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조

8. 남북회담 관련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9. 남북교류 질서 관리를 위한 법령·제도 기획 및 운영

10. 남북한 간 상사중재 및 투자 자산보호, 이중과세방지, 청산 결제 등 제도 기획·개선

11. 남북교류 관련 법률적 대응 사항 지원

12. 남북교류 관련 정책의 수립

· 추진 및 분석평가

13. 남북교류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시행

14. 남북교류 관련 중장기 계획
의 수립·추진

15. 남북관계 관련 통계의 총괄
및 대국민 제공에 관한 사항

16.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17. 남북대화 및 교류 관련 국제
협력 업무

18. 남북대화 관련 법인·단체
에 대한 지원 및 협조

19. 단 내 국회·홍보·사무·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④ 당국사업운영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경제분야의 남북교류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2. 남북교류 관련 우리 기업 재
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수
립 및 현안 대응

3.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
제협력에 관한 교류법상 각종
승인·수리에 관한 사항

4.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
제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조사 및 조
정명령

5.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
제협력사업 관련 남북협력기
금 지원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6. 북한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제도 관련 업무

7. 남북교류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8. 경제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9. 남북한 간 교역품목의 공고

10. 남북한 간 교역에 관한 결제
업무 취급기관 지정

11. 남북한 간 통행·통신·통관
관련 제도 개선

12. 남북출입계획의 총괄·기획
및 조정

13.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및 출입
심사공무원 지정

14.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련
법·제도 운영

15.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련
사전판정 지원 및 관련 업무

를 위탁받은 기관과의 협조

16. 남북교류 관련 대북제재 동
향 파악 및 이행점검

17. 남북한 간 합의에 의해 추진
하는 남북협력지구의 조성·
운영·관리·지원 정책의 수
립·시행

18. 개성공업지구 사업 관련 기
업 및 재산에 대한 관리·지
원

19. 개성공업지구의 사업 관련
관리기관의 지도·감독

20. 평화경제특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기획·운영

21. 평화경제특구 관련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2. 남북협력지구의 종합지원센
터 운영 지원

23. 그 밖에 개성공단 남북공동
위원회 사무처 운영 및 지원
에 관한 사항

24. 남북 공유하천관리 및 재해
재난 관련 정책 수립 및 현안
대응

⑤ 민간교류관리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 간 교육, 학술, 언론, 방송, 노동, 출판, 종교, 청소년, 여성, 예술, 체육, 역사, 언어, 저작권 등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이하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이라 한다)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교류법상 각종 승인·수리에 관한 사항
2.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3. 남북한 간 관광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추진 및 북한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현안 대응
4.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을 하는 사람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5.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방문자 사후관리
6.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7.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8.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의
동향 분석·종합 및 통계 유
지

9.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에
관한 지원·기획 및 조정

⑥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판문점, 경의선·동해선 등 남
북한 간 출입장소 관련 시설·
장비, 출입, 보안, 방호 등 통
제·관리

2. 남북통신망 등의 관리·운용,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

3. 판문점, 경의선·동해선 등 남
북한 간 출입장소 관련 각종
행사 등 지원

4. 판문점, 경의선·동해선 등 남
북한 간 출입장소 관련사항의
전산화 및 통계 관리

5. 기타 청사 시설 및 장비의 관
리,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
관리

6. 경의선·동해선 등 철도·도로
출입시설에 대한 체험·견학
등 지원

7. 단 내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총괄

⑦ 상황관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 간 연락 및 협의에 관
한 사항의 종합·조정

2. 연락관의 파견 및 남북연락
업무의 수행

3. 남북직통전화의 운용 및 판
문점지역 동향의 수집, 군사정
전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조

4.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
한 남북한 간 합의에 따른 연
락사무소의 운영

5. 판문점지역 내 행사를 포함
한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에 관한 행사운영계
획의 기획·운영

6.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
동행사와 관련된 회담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7. 판문점, 경의선·동해선 등 남
북한 간 출입장소 관련 긴급
상황의 처리 및 관계기관 협
조

8. 남북회담 자료에 대한 데이

제11조(회담기획부) ① 회담기획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회담기획부에 정치군사회담
 과·경제인도회담과 및 회담지
 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
 관·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
 로 보한다.

③ 정치군사회담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남북회담 추진전략의 수립
3. 남북회담 기획 및 대북교섭
 전략의 수립·조정
4. 남북회담 관련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5. 남북회담 대비 훈련계획 수
 립
6.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

터베이스 구축, 자료 수집·발
 간 및 자료실의 운영

9. 그 밖에 남북한 간 연락·출입
 에 관한 사항

<삭 제>

- 간 안보회담 협상대책의 수립
7.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
간 안보회담의 기획 및 대북
교섭
8.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
간 안보회담 대표단의 임명·
관리
9.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
간 안보회담 관련 전화통지문
· 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10.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
자간 안보회담의 진행 관리
및 결과의 처리
11.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
자간 안보회담과 관련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12.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
자간 안보회담과 관련된 대책
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13.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
자간 안보회담과 관련한 자료
의 수집·발간
14.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
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경제인도회담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남북회담 대비 훈련계획 시행
2. 남북회담 및 대북교섭 유경협자 협력체계 구축 관리
3.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북협상 지원
4. 경제·사회문화·인도·북한 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 및 협상대책의 수립·시행
5. 경제·사회문화·인도·북한 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 기획 및 대북교섭
6. 경제·사회문화·인도·북한 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대표단의 임명·관리
7. 경제·사회문화·인도·북한 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8. 경제·사회문화·인도·북한 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의 진행 및 진행

상황 · 결과의 처리

9. 경제 · 사회문화 · 인도 · 북한

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
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10. 경제 · 사회문화 · 인도 · 북

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
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대
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11. 경제 · 사회문화 · 인도 · 북

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
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자
료의 수집 · 발간

⑤ 회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인사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예산의 편성 · 집행 및 결산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 ·
관리

5. 청사 시설 및 장비의 관리

6.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
동행사 지원

제12조(회담운영연락부) ① 회담
운영연락부장은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

<삭 제>

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
등급으로 한다.

② 회담운영연락부에 회담운영
과 및 남북연락과를 두며, 각 과
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수
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③ 회담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회담에 관한 국내외 홍
보

2. 남북회담 자료에 대한 데이
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실의
운영

3.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
동행사에 관한 행사운영계획
의 수립·시행

4.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
동행사와 관련된 관계 기관과
의 협조

5.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
동행사 관련 상황실 설치·운
영

6.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
동행사와 관련된 연락관 협의
계획의 수립·시행

7.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

동행사의 운영에 관한 훈련
시행

8.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
동행사와 관련된 회담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9.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
동행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 발간

10. 남북회담대표단의 북한 방
문 준비 및 지원

11.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
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남북연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 간 연락 및 협의에 관
한 사항의 종합·조정

2. 연락관의 파견 및 남북연락
업무의 수행

3. 남북직통전화의 운용

4. 판문점지역 동향의 수집

5. 군사정전위원회 및 판문점지
역 관계 기관과의 협조

6.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 등
의 운영

7.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
한 남북한 간 합의에 따른 연

락사무소의 운영 지원

8. 판문점지역 안의 시설 및 통
신망 등의 관리·운용

9. 판문점지역 안의 출입 및 보
안 통제

10. 남북회담·접촉·교류 등과
관련한 판문점지역에서의 행
사지원

11. 판문점 견학 총괄 및 관계
기관 협조

12.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13. 그 밖에 남북한 간 연락에
관한 사항

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신 설>

제19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
무소) 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
로 한다.

② ~ ④ (생략)

⑥ (생략)

<삭 제>

제4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제10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
무소) ① -----

----- 나등급으로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9조의2(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① ~ ④ (생략)

⑥ (생략)

제6장의2 남북출입사무소

제19조의3(남북출입사무소) ① 남북출입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남북출입사무소에 경의선운영과 및 동해선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동해선운영과의 대외명칭은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동해출장소로 하고, 동해선운영과장의 대외명칭은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동해출장소장으로 한다.

③ 경의선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출입계획의 총괄·기획 및 조정
2.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제도의 수립 및 개선
3.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제11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삭 제>

<삭 제>

대북 협의대책의 수립

4.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5.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사항의 홍보
6. 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인사
 - 보안 및 문서관리
7. 사무소 예산안의 편성, 예산의 집행·회계 및 결산
8. 경의선 출입과 관련되는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
9. 경의선 출입을 위한 시설·장비의 유지 및 관리
10. 경의선 철도·도로의 운영과 관련되는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
11.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사항의 전산화 및 통계의 유지
12. 남북출입시설과 부지의 설치공사 및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13. 경의선 출입시설 안의 식당의 운영 등 후생지원
14. 경의선 출입시설 안의 남북간 행사지원
15. 남북출입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관리

16. 경의선 출입심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17. 경의선 철도·도로를 이용
한 남북한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

18. 경의선 철도·도로를 이용
한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을 위한 승인신청서의 접수

19. 경의선 철도·도로를 이용
한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에 대한 승인 여부의 확인

20. 경의선 철도·도로를 이용
한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방문
증명서 재발급, 방문신고 수리
· 확인 등 민원사무

21. 경의선 철도·도로의 운영
및 출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긴급상황의 처리

22. 경의선 출입심사와 관련되
는 기관과의 협조

23. 경의선 열차·차량의 운행
을 위하여 필요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 업무

24. 경의선 열차 운행을 위한 남

북열차운행사무소 운영

25. 개성공업지구 방문예정자에

대한 방북안내교육

26.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상황

처리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협
의

27. 경의선 철도·도로 출입시

설에 대한 체험·견학 등 지
원

28.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

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⑤ 동해선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해선 출입심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동해선 철도·도로의 이용을
위한 남북한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

3. 동해선 철도·도로를 이용하
는 남북한간의 왕래, 수송장비
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
입 등을 위한 승인신청서의

접수

4. 동해선 철도·도로를 이용하는 남북한간의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에 대한 승인 여부의 확인
5. 동해선 철도·도로의 운영 및 출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긴급상황의 처리
6. 동해선 출입심사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협조
7. 동해선 열차·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 업무
8. 동해선 철도·도로의 운영과 관련되는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용
9. 동해선 출입과 관련되는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
10. 동해선 출입시설 안의 남북한간 행사 지원
11. 동해선 출입시설·부지의 설치공사 및 운영·관리
12. 동해선 출입시설 안의 식당의 운영 등 후생지원
13. 동해선 철도·도로를 이용

한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방문
증명서 재발급, 방문신고 수리
· 확인 등 민원사무

14. 동해선 철도·도로 출입시
설에 대한 체험·견학 등 지
원

제7장의3 북한인권기록센터

<신 설>

제20조의3(북한인권기록센터) ①

· ② (생 략)

③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7. 북한인권 실태조사 연례보고
서 발간 및 인권침해 사례 연
구

8. 북한인권 관련 인명기록카드
작성·관리

9. · 9의2. (생 략)

10. · 11. (생 략)

④ 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 6. (생 략)

<신 설>

7. ~ 12. (생 략)

<삭 제>

제5장 북한인권기록센터

제12조(북한인권기록센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6. (현행과 같음)

7. ----- 침해 -----

--

<삭 제>

8. · 9. (현행 제9호 및 제9호의2
와 같음)

10. · 11. (현행과 같음)

④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7. ~ 12. (현행과 같음)

제7장의4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신 설>

제20조의4(한반도통일미래센터)

- ① (생 략)
- ② 센터에 기획운영과 및 관리과를 둔다.
- ③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관리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 ④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7. 예산안의 편성
 8. (생 략)
 10. ~ 14. (생 략)

<삭 제>

제6장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제13조(한반도통일미래센터)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② 센터장-----
--.

1. ~ 6. (현행과 같음)
7. ----- 편성·집행·회계 및 결산
8. (현행과 같음)
9. ~ 13. (현행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⑥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센터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
무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예산의 집행·회계 및 결산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
조달·관리

5. 센터 시설·장비의 유지 및
관리

5의2. 식당·숙박시설 및 보건
실 등 센터 후생시설의 운영

5의3. 센터 내 자연재해, 화재

14. 센터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
무 및 문서관리

15. 센터 내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1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
조달·관리

17. 센터 시설·장비의 유지 및
관리

18. 식당·숙박시설 및 보건실
등 센터 후생시설의 운영

19. 센터 내 자연재해, 화재 및
그 밖의 재난에 대한 안전 대
책의 수립·시행

<삭 제>

및 그 밖의 재난에 대한 안전 대책의 수립·시행

6.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장의5 국립통일교육원

<신 설>

제20조의5·제20조의6 (생 략)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신 설>

제21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②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12명(5급 4명, 6급 3명, 7급 3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

<삭 제>

제7장 국립통일교육원

제14조·제15조 (현행 제20조의5 및 제20조의6과 같음)

<삭 제>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16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담당하는 1명(4·5급 1명), 통일인식확산 업무를 담당하는 -----20명(4급 7명, 5급-----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여야 한다.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에 따라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생략)

④ 남북출입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 ⑦ 삭제

⑧ (생략)

⑨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4와 같으며, 한반도통일미래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남북관계관리단-----

-----.

② ----- 남북관계관리단-----
----- 있다. <후단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삭제>

⑧(현행과 같음)

⑨ -----

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6
급 4명 및 7급 4명은 임기제공
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⑩ (생략)

제22조의2 (생략)

제2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제36조에서 “통일부령으
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국립
통일교육원장을 말한다.

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
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
라 홍보담당관·개발지원협력
과장 및 국립통일교육원에 두는
과장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과장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2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3명 및 -- 3명은 -----
-----.

⑩ (현행과 같음)

제18조 (현행 제22조의2와 같음)

<삭제>

제19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
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3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정치군사 회담과, 경제인도회담과, 회담 지원과, 회담운영과 및 남북연 락과로 한다. 제24조 (생 략) 제25조(통일전략기획관) ① 통일 전략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 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 급으로 한다. ② 통일전략기획관에 두는 공무 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제26조(통일미래추진단) ① 통일 미래추진단장은 서기관으로 보 한다. ② 통일미래추진단에 두는 공무 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제27조 (생 략)	----- 정 보분석국에 두는 정보분석총괄 과, 정치군사분석과, 경제분석 과, 사회문화분석팀으-- --. 제20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제21조(통일기획관) ① 통일기획 관----- ----- ----- -----. ② 통일기획관----- ----- -----. 제22조(통일미래추진과) ① 통일 미래추진과장----- -----. ② 통일미래추진과----- ----- -----. 제23조 (현행 제27조와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통일부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통일부 공무원정원표	(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u>309</u>	<u>273</u>	-36
·	·	·	
·	·	·	
일반직 계	<u>305</u>	<u>269</u>	-36
고위공무원단	<u>12</u>	<u>10</u>	-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u>9</u>	<u>8</u>	-1
서기관	<u>15</u>	<u>13</u>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6</u>	<u>5</u>	-1
<u>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u>	<u><신 설></u>	<u>2</u>	+2
·	·	·	
<u>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u>	<u><신 설></u>	<u>27</u>	+27
<u>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u>			
<u>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u>30</u>	<u><삭 제></u>	-30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u>80</u>	<u>65</u>	-15
<u>행정사무관</u>	<u><신 설></u>	<u>4</u>	+4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0</u>	<u>4</u>	-6
.	.	.	
.	.	.	
행정주사	<u>33</u>	<u>29</u>	-4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u>4</u>	<u>2</u>	-2
<u>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u>	<u>17</u>	<u><삭 제></u>	-17
.	.	.	
전산주사	<u>6</u>	<u>5</u>	-1
.	.	.	

<u>행정 · 공업 · 시설 · 방송통신주 사</u>	<u><신 설></u>	<u>16</u>	+16
·	·	·	
행정주사보	<u>13</u>	<u>11</u>	-2
·	·	·	
·	·	·	
행정서기	<u>10</u>	<u>9</u>	-1
<u>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방 송통신서기 또는 운전서기</u>	<u><신 설></u>	<u>8</u>	+8
<u>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 방송통신서기 또는 운전서기</u>	<u>8</u>	<u><삭 제></u>	-8
·	·	·	
<u>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u>	<u><신 설></u>	<u>1</u>	+1
<u>행정서기보</u>	<u>4</u>	<u><삭 제></u>	-4
·	·	·	
·	·	·	
<u>행정전문관</u>	<u><신 설></u>	<u>2</u>	+2

[별표 1의2]

통일부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통일부 공무원정원표	<u>(제21조제1항 단서 관련)</u>	<u>(제16조제1항 단서 관련)</u>	
총계	<u>309</u>	<u>273</u>	-36
·	·	·	
·	·	·	
일반직 계	<u>305</u>	<u>269</u>	-36
<u>고위공무원단</u>	<u><신 설></u>	<u>10</u>	+10
<u>고위공무원단</u>	<u>12</u>	<u><삭 제></u>	-1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u>9</u>	<u>8</u>	-1
서기관	<u>15</u>	<u>13</u>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6</u>	<u>5</u>	-1
<u>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u>	<u><신 설></u>	<u>2</u>	+2
·	·	·	
<u>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u>	<u><신 설></u>	<u>27</u>	+27
<u>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u>			
<u>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u>30</u>	<u><삭 제></u>	-30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u>83</u>	<u>68</u>	-15
<u>행정사무관</u>	<u><신 설></u>	<u>4</u>	+4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0</u>	<u>4</u>	-6
.	.	.	
.	.	.	
행정주사	<u>30</u>	<u>26</u>	-4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u>4</u>	<u>2</u>	-2
<u>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u>	<u>17</u>	<u><삭 제></u>	-17
.	.	.	
전산주사	<u>6</u>	<u>5</u>	-1
.	.	.	

<u>행정 · 공업 · 시설 · 방송통신주 사</u>	<u><신 설></u>	<u>16</u>	+16
·	·	·	
행정주사보	<u>13</u>	<u>11</u>	-2
·	·	·	
·	·	·	
행정서기	<u>10</u>	<u>9</u>	-1
<u>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방 송통신서기 또는 운전서기</u>	<u><신 설></u>	<u>8</u>	+8
<u>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 방송통신서기 또는 운전서기</u>	<u>8</u>	<u><삭 제></u>	-8
·	·	·	
<u>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u>	<u><신 설></u>	<u>1</u>	+1
<u>행정서기보</u>	<u>4</u>	<u><삭 제></u>	-4
·	·	·	
·	·	·	
<u>행정전문관</u>	<u><신 설></u>	<u>2</u>	+2

[별표 2]

남북관계관리단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남북관계관리단 공무원정원표	<u>(제22조제1항 관련)</u>	<u>(제17조제1항 관련)</u>	
총계	<u>72</u>	<u>64</u>	-8
일반직 계	<u>72</u>	<u>64</u>	-8
고위공무원단	<u>3</u>	<u>1</u>	-2
<u>서기관</u>	<u><신 설></u>	<u>2</u>	+2
<u>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u>	<u><신 설></u>	<u>1</u>	+1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신 설></u>	<u>1</u>	+1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u>	<u>1</u>	<u><삭 제></u>	-1
<u>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u>	<u>4</u>	<u><삭 제></u>	-4
.	.	.	
<u>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u>	<u><신 설></u>	<u>14</u>	+14
행정사무관	<u>9</u>	<u>3</u>	-6
<u>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u>	<u><신 설></u>	<u>1</u>	+1

<u>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u><신 설></u>	<u>2</u>	+2
·	·	·	
행정주사	<u>7</u>	<u>4</u>	-3
·	·	·	
<u>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u>	<u>1</u>	<u><삭 제></u>	-1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2</u>	<u>4</u>	+2
<u>행정 · 공업 · 시설 또는 방송통신주사</u>	<u><신 설></u>	<u>1</u>	+1
<u>행정주사보</u>	<u>1</u>	<u><삭 제></u>	-1
·	·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1</u>	<u>2</u>	+1
<u>행정서기</u>	<u>3</u>	<u><삭 제></u>	-3
공업서기 · 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4</u>	<u>5</u>	+1
<u>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u>	<u>3</u>	<u><삭 제></u>	-3
방호서기보	<u>6</u>	<u>5</u>	-1

<u>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 서기보 · 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위생서기보</u>	<u><신 설></u>	<u>3</u>	+3
<u>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 서기보 · 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위생서기보</u>	<u>5</u>	<u><삭 제></u>	-5
·	·	·	
운전서기보	<u>3</u>	<u>4</u>	+1
·	·	·	
·	·	·	
<u>기계운영서기보</u>	<u><신 설></u>	<u>1</u>	+1
<u>기계운영서기보</u>	<u>1</u>	<u><삭 제></u>	-1
<u>수석전문관 또는 행정전문관</u>	<u>7</u>	<u><삭 제></u>	-7
·	·	·	
<u>전문경력관 나군(속기 담당)</u>	<u>1</u>	<u><삭 제></u>	-1

[별표 4]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공무원 정원표	(제22조제 3항 본문 관련)	(제17조 제3항 본 문 관련)	
총 계	95	91	-4
일반직 계	95	91	-4
.	.	.	
<u>서기관</u>	<신 설>	2	+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신 설>	3	+3
행정사무관	<신 설>	8	+8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신 설>	1	+1
의무사무관	<신 설>	8	+8
간호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신 설>	2	+2
행정주사	<신 설>	20	+20
전산주사	<신 설>	2	+2
간호주사 또는 약무주사	<신 설>	2	+2
행정주사보	<신 설>	14	+14

<u>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u> <u>또는 방송통신주사보</u>	<u><신 설></u>	<u>1</u>	+1
<u>농업주사보</u>	<u><신 설></u>	<u>1</u>	+1
<u>간호주사보</u>	<u><신 설></u>	<u>3</u>	+3
<u>약무주사보</u>	<u><신 설></u>	<u>1</u>	+1
<u>행정서기</u>	<u><신 설></u>	<u>1</u>	+1
<u>공업서기 · 시설서기</u> 또는 <u>방송통신서기</u>	<u><신 설></u>	<u>3</u>	+3
<u>간호서기</u>	<u><신 설></u>	<u>2</u>	+2
<u>의료기술서기</u>	<u><신 설></u>	<u>3</u>	+3
<u>행정서기보</u> 또는 <u>운전서기보</u>	<u><신 설></u>	<u>3</u>	+3
<u>방호서기보</u>	<u><신 설></u>	<u>6</u>	+6
<u>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u> <u>또는 방송통신서기보</u>	<u><신 설></u>	<u>2</u>	+2
<u>서기관</u>	<u>2</u>	<u><삭 제></u>	-2
<u>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u>	<u>3</u>	<u><삭 제></u>	-3
<u>행정사무관</u>	<u>8</u>	<u><삭 제></u>	-8
<u>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u> <u>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u>1</u>	<u><삭 제></u>	-1
<u>의무사무관</u>	<u>8</u>	<u><삭 제></u>	-8

<u>간호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u>	<u>2</u>	<u><삭 제></u>	-2
<u>행정주사</u>	<u>21</u>	<u><삭 제></u>	-21
<u>전산주사</u>	<u>2</u>	<u><삭 제></u>	-2
<u>간호주사 또는 약무주사</u>	<u>2</u>	<u><삭 제></u>	-2
<u>행정주사보</u>	<u>13</u>	<u><삭 제></u>	-13
<u>농업주사보</u>	<u>1</u>	<u><삭 제></u>	-1
<u>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u> <u>또는 방송통신주사보</u>	<u>1</u>	<u><삭 제></u>	-1
<u>간호주사보 또는 약무주사보</u>	<u>5</u>	<u><삭 제></u>	-5
<u>행정서기</u>	<u>1</u>	<u><삭 제></u>	-1
<u>공업서기 · 시설서기 또는</u> <u>방송통신서기</u>	<u>4</u>	<u><삭 제></u>	-4
<u>간호서기</u>	<u>2</u>	<u><삭 제></u>	-2
<u>의료기술서기</u>	<u>3</u>	<u><삭 제></u>	-3
<u>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u>	<u>4</u>	<u><삭 제></u>	-4
<u>방호서기보</u>	<u>6</u>	<u><삭 제></u>	-6
<u>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u> <u>또는 방송통신서기보</u>	<u>3</u>	<u><삭 제></u>	-3
<u>운전서기보</u>	<u>2</u>	<u><삭 제></u>	-2
<u>운전서기보</u>	<u><신 설></u>	<u>2</u>	+2

[별표 4의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공무원 정원표	(제22조제 3항 단서 관련)	(제17조 제3항 단 서 관련)	
총 계	95	91	-4
일반직 계	95	91	-4
.	.	.	
<u>서기관</u>	<신 설>	2	+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신 설>	3	+3
행정사무관	<신 설>	9	+9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신 설>	1	+1
의무사무관	<신 설>	8	+8
간호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신 설>	2	+2
행정주사	<신 설>	19	+19
전산주사	<신 설>	2	+2
간호주사 또는 약무주사	<신 설>	2	+2
행정주사보	<신 설>	14	+14

<u>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u> <u>또는 방송통신주사보</u>	<u><신 설></u>	<u>1</u>	+1
<u>농업주사보</u>	<u><신 설></u>	<u>1</u>	+1
<u>간호주사보</u>	<u><신 설></u>	<u>3</u>	+3
<u>약무주사보</u>	<u><신 설></u>	<u>1</u>	+1
<u>행정서기</u>	<u><신 설></u>	<u>1</u>	+1
<u>공업서기 · 시설서기</u> 또는 <u>방송통신서기</u>	<u><신 설></u>	<u>3</u>	+3
<u>간호서기</u>	<u><신 설></u>	<u>2</u>	+2
<u>의료기술서기</u>	<u><신 설></u>	<u>3</u>	+3
<u>행정서기보</u> 또는 <u>운전서기보</u>	<u><신 설></u>	<u>3</u>	+3
<u>방호서기보</u>	<u><신 설></u>	<u>6</u>	+6
<u>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u> <u>또는 방송통신서기보</u>	<u><신 설></u>	<u>2</u>	+2
<u>서기관</u>	<u>2</u>	<u><삭 제></u>	-2
<u>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u>	<u>3</u>	<u><삭 제></u>	-3
<u>행정사무관</u>	<u>9</u>	<u><삭 제></u>	-9
<u>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u> <u>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u>1</u>	<u><삭 제></u>	-1
<u>의무사무관</u>	<u>8</u>	<u><삭 제></u>	-8

<u>간호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u>	<u>2</u>	<u><삭 제></u>	-2
<u>행정주사</u>	<u>20</u>	<u><삭 제></u>	-20
<u>전산주사</u>	<u>2</u>	<u><삭 제></u>	-2
<u>간호주사 또는 약무주사</u>	<u>2</u>	<u><삭 제></u>	-2
<u>행정주사보</u>	<u>13</u>	<u><삭 제></u>	-13
<u>농업주사보</u>	<u>1</u>	<u><삭 제></u>	-1
<u>공 업 주 사 보 · 시 설 주 사 보</u> <u>또는 방송통신주사보</u>	<u>1</u>	<u><삭 제></u>	-1
<u>간호주사보 또는 약무주사보</u>	<u>5</u>	<u><삭 제></u>	-5
<u>행정서기</u>	<u>1</u>	<u><삭 제></u>	-1
<u>공업서기 · 시설서기</u> <u>또는</u> <u>방송통신서기</u>	<u>4</u>	<u><삭 제></u>	-4
<u>간호서기</u>	<u>2</u>	<u><삭 제></u>	-2
<u>의료기술서기</u>	<u>3</u>	<u><삭 제></u>	-3
<u>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u>	<u>4</u>	<u><삭 제></u>	-4
<u>방호서기보</u>	<u>6</u>	<u><삭 제></u>	-6
<u>공 업 서 기 보 · 시 설 서 기 보</u> <u>또는 방송통신서기보</u>	<u>3</u>	<u><삭 제></u>	-3
<u>운전서기보</u>	<u>2</u>	<u><삭 제></u>	-2
<u>운전서기보</u>	<u><신 설></u>	<u>2</u>	+2

[별표 7의2]

북한인권기록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8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북한인권기록센터 공무원 정원표	<u>(제22조제8항 본문 관련)</u>	<u>(제17조제8항 본문 관련)</u>	
•	•	•	
•	•	•	

[별표 7의3]

북한인권기록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8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북한인권기록센터 공무원 정원표	<u>(제22조제8항 단서 관련)</u>	<u>(제17조제8항 단서 관련)</u>	
•	•	•	
•	•	•	

[별표 7의4]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9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한 반 도 통 일 미 래 센 터 공무원정원표	(제22조제 9항 본문 관련)	(제17조 제9항 본 문 관련)	
총계	<u>22</u>	<u>15</u>	-7
일반직 계	<u>22</u>	<u>15</u>	-7
·	·	·	
·	·	·	
<u>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 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u>2</u>	<u><삭 제></u>	-2
행정주사	<u>6</u>	<u>4</u>	-2
<u>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u>	<u><신 설></u>	<u>2</u>	+2
<u>전산주사</u>	<u>1</u>	<u><삭 제></u>	-1
<u>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u>	<u>2</u>	<u><삭 제></u>	-2
행정주사보	<u>6</u>	<u>4</u>	-2
<u>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u>	<u><신 설></u>	<u>1</u>	+1
<u>간호주사보</u>	<u><신 설></u>	<u>1</u>	+1

	.	.	.	
	.	.	.	

[별표 7의6]

국립통일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0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국립통일교육원 공무원 정원표	(제22조제 10항 관 련)	(제17조 제10항 관련)	
•	•	•	
•	•	•	

[별표 12]

통일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3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통일부 공무원 한시정원표	<u>(제27조 관련)</u>	<u>(제23조 관련)</u>	
•	•	•	
•	•	•	